

수 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2019. 9. .

제 목: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
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
의합니다.

첨 부: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_____위원 (인) 외 1인

(발의 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의안 번호	19-128
----------	--------

발의년월일 : 2019. 9. .
발 의 자 :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최은하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규정 준수 및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구성으로 개정
- 나. 조례의 목적 중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으로 개정(안 제1조)
-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규정과 쉬운말(순화용어)로 쓰기 규정 반영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8조~안 제12조)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6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4. 입법예고 : 2019. 9. 11.~9. 16.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6. 조례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자료”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계 공무원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 하게**”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로 한다.

제9조 중 “**세미나의**”를 “**세미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 보관**”을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관계전문**”을 “**관계 전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을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u></p> <p><u>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p>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 사람으로 -----

-----.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

---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

--- 세미나 -----

-----.

제10조(회의록) ①-----

--- 작성·보관-----.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
한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관계 전문-----
----- 범위-----
-----.

제12조(운영세칙) -----
--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